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출년	월일 :	2021.	11. 9.
번호	X-732				제 출	자:	안 산	시 장
저]안이유							
) 선부동 한마음	음임대아파트기	가 안전진 단	ŀ결과 D∀	등급 꼭	한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	면서 2019.	1. 철거되	었고,				
) 본 조례의 목적	먹이 되는 해당	ł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 o E	모 실	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	고자 함.						
□ 4	^드 요내용							
	"동조례 폐지"							
_ J	지조례안 :	붙임1						
□ सं	난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윾	<u>)</u>					
□ सं	난 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윾	<u>)</u>					
여	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ス	}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u>)</u>					
	입법예고 : 20	21. 9. 13.	~ 2021.	10. 3.	(20일	간)		
□ ブ	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	붙임2						
	방침결정문:	붙임3						

〈 붙임 1 >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일자리정책과				
o]	실·과장 직위·성명	일자리정책과장 전 영 희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노동정책팀장 노 현 서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예 빈 (행정 3276)				

〈 붙임 2 >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현행)

(민생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제정 1986.11.25 조례 제0124호

개정 1990.05.01 조례 제0321호

개정 1990.07.11 조례 제0330호

개정 1992.05.13 조례 제0448호

개정 1993.05.27 조례 제0493호

개정 1994.05.14 조례 제0544호

개정 1994.10.08 조례 제0561호

개정 1995.04.26 조례 제0627호

개정 1996.11.14 조례 제0717호

개정 1998.10.12 조례 제0797호

개정 2000.01.14 조례 제0898호

개정 2002.10.08 조례 제1033호(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4.10.20 조례 제1152호

(일부개정) 2007.04.27 조례 제1305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8.01.11 조례 제1377호

(일부개정) 2010.09.27 조례 제1548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0.10.29 조례 제1568호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2.04.01 조례 제1672호

(일부개정) 2013.02.22 조례 제1751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1863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04.20 조례 제1993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 독신 여성의 복지향상과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생활안정을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한마음임대아파트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01.11〉

제2조(위치) 안산시한마음임대아파트(이하"임대아파트"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33(선부동)에 둔다. 〈개정 2002.10.08, 2008.01.11〉

제3조(관리) 임대 아파트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다만, 제9 조에 의한 위탁관리시에는 별도 수탁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이를 관리토록 한다. 〈개정

1998.10.12, 2007.4.27, 2010.09.27, 2013.02.22.,2015.01.01.,2016.4.20.

- **제4조**(입주대상자)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 독신 여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로 할 수 있다. 〈개정2008.01.11, 2010.09.27, 2013.02.22., 2015.01.01., 2016.4.20.〉
 - ② 임대아파트의 최대 입주인원은 300명으로 하고, 호당 입주인원은 3인이내로 한다. 〈개정2008.01.11〉
- **제5조**(입주허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9.27, 2013.02.22.,2015.01.01.,2016.4.20.〉
- **제6조**(임대료등 납부 및 환불)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0.1.4,2004.10.20>
 -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2.22., 2015.01.01., 2016.4.20.〉
- 제7조(입주허가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08.01.11, 2010.09.27, 2013.02.22., 2015.01.01., 2016.4.20.〉
 - 1.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 2. 전염병환자 〈개정 2012.04.01〉
 -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4. 제8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다만, 제8조제5호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 중 다시 입주대상자가 된 자는 제외하다.
 - 5. 기타 입주허가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자
 - 6. 입주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자 〈신설2008.01.11〉
- **제8조**(입주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2008.01.11, 2010.09.27, 2013.02.22., 2015.01.01., 2016.4.20.〉
 -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한 자 〈개정 1990.07.11〉
 - 3. 시설내에서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 4.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자
 - 5. 타 사업장으로 전직한 자. 다만, 전직된 사업장에서 재 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6. 임대료등을 2월이상 체납한 자
 - 7. 시장의 허기없이 타인을 동숙시킨 자 〈개정 2010.09.27., 2013.02.22., 2015.01.01., 2016.4.20.〉
 - 8. 입주자의 혼인

- 9. 기타 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아파트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시가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할 수 있다. 〈개정 1998.10.12, 2010.10.29〉
 - ②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를 위탁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 이 조례에 의한 임대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임대료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0.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4.26)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만료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받아 입주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01.11)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입주자는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201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6.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